

뿌리기업 확인서				발급번호			
				유효기간		발급일로부터 3년	
업체명	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번호)				
대표자성명			생년월일				
사업장	주소						
	전화번호				FAX		
	E-mail						
사업개시일			종사자수				제조면적
업종							
주요생산품							
활용기술							
용도							
「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 임을 상기와 같이 증명합니다. 2020년 2월 17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(인) 							